

광주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5917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1. 27.

판결 선고2024. 12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건물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.291m² D호 건물을 인도하고,

나. 2024. 1. 4.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,000원1)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김혜선

별지

1) 매월 관리비 5만 원 포함